



Web Contents



2024년 04월 26일 23시 11분

기본설명

신고품목 및 신고대상

신고방법

사업근거

재활용폐기물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

신고방법

- 1. 서면신고
 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9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
- 2. 전자신고
 -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(www.re.or.kr)을 통해 전자신고

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바로가기

신고사항

계약사항, 처리실적, 처리방법

신고주체	신고항목	신고내용
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는 자	계약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(단가, 기간, 품목 등) ※ 계약 변경 및 해지 내용 포함, 계약서 등록 필수
	처리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품목별 중량을 산출하여 월 단위 신고 · 배출자가 직접 계량하거나 수거업체에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입력 ※ 수거업체가 실적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지역별·단지규모별 원단위 이용(www.re.or.kr)
	처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거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 방법 ※ 품목별 수집운반업체가 공급하는 재활용업체 등

기입력 자료에 대한 주요확인 사항

- ① 지역(품목)별 세대당 평균 배출량을 크게 벗어난 데이터 (ex. 종이류 배출량 0.1kg/세대·월 미만 또는 1,000kg/세대·월 이상 등)
- ② 신고단위 오류: ton(*), 금액(*) (※ kg 단위로 신고하여야 함)
- ③ 매월 동일한 배출량으로 실적 신고
- ④ 기타: 중복가입자, 실적 미신고(계약정보, 처리실적, 처리방법) 공동주택 관리
※ 2021년 수치는 2022. 02월말까지 서면·전자신고

MokPo - Si
Web Contents

